

I. 경제사회분류 전문가회의 결과

1. ISIC/CPC 시행 프로그램 관련 토의

○ 추진일정 관련

- 전문가 그룹은 각 국가별로 센서스에 적용할 수 있도록 2009년까지 국제표준산업분류 Rev.4를 채택하도록 권고
- 국제기구에 보고하는 자료가 2012년까지 개정안 형태로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권고
- 개별적 프로그램 즉, 사업자 등록, 표본설계 및 표본조사를 위한 가중치의 설정 등 개별 프로그램을 위한 중간목표가 토의되었으나 각 국의 서로 다른 특성 및 프로그램 조직 등 때문에 결론에 이르지 못함
- 자료의 backcasting 또한 각 국가별 시계열 범위 등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시기를 정하지 못함

○ 관련 자료 및 문서

- 문서 지원을 위해 전문가 그룹은 사업자 등록 보고를 위한 주요 틀로서 국제표준산업분류 신구분류 연계표의 필요성을 강조
- 잠정연계표라도 제공할 것을 전문가 그룹에서 요청하였으나 2007년 5월까지 UNSD와 TSG가 최종안을 내놓을 예정
- 전문가 그룹은 TSG에게 ISIC와 CPC에 대한 지침서를 만들기로 동의. 국제분류 구분류를 신분류로 변환하는 작업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가 그룹은 전환을 지원하는 가이드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할 것을 권고함. 2007년 12월까지 가이드를 최종 마무리할 것을

확인

- backcasting 뿐만 아니라 사업자 등록, 표본설계, 가중치 평가들에 대한 것들을 포함한 문서들이 NACE의 시행을 위한 EUROSTAT에 의해서 개발된 문서에 기초하여 준비될 것임. 이러한 문제들은 국제적인 활용 측면에서 검토될 것이며 필요하다면 수정될 것임
- 전문가 그룹은 ISIC와 CPC 발간과 관련된 현안문제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고 특히 ISIC에서 아웃소싱의 처리에 대한 진행되는 토론 과정들이 그러한 것임. 이러한 문제는 추후에 전문가 그룹에 회부될 ISIC와 CPC의 기술소그룹에 의해서 더 토의될 것임

○ 지역별 워크숍

- 지역 워크숍은 2007/8년 ISIC 및 CPC 시행의 첫단계로서 지지를 받았고 통계위원회에 보고된 것처럼 UNSD에 의해서 수행될 것임.
- 전문가 그룹에서 이러한 워크숍은 모든 지역에 적용되어야 한다고 함. 회의 2차 모임은 2008/9년에 있을 예정이며 사업자 등록, 통계자료 수집프로그램, 행정자료에의 분류의 활용 같은 분류 시행의 특정사항들에 접근할 것임.

○ 기술 협력

- 전문가 그룹은 기술적 협력을 위해 지역 협조체계 원칙을 지지함. 일반적인 법칙으로서 미국, 캐나다 및 선정된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이 ECLAC 지역들을 지원하도록 책임을 떠맡음. EU 구성원들은 ECA, ECE 및 ESCWA 지역에 대해서는 오스트레일리아 등이 지원을 할 것이며 UNSD는 GCC 국가들 같은 특수지역을 지원할 것임.

- 이러한 지원은 공개 토의 포럼을 통하여 조직될 것이며 전문가 그룹은 이러한 시스템을 더 개발하도록 요청함

2. 상품용도분류(BEC)

- 전문가 그룹은 BEC와 HS, SITC같은 품목분류 사이의 연계표 업데이트를 위해 수행된 일들을 검토하고 BEC 업데이트를 위한 가능한 옵션과 범위의 확장 등에 대해 토의하고 방법론적인 개정 앞서 1차적 적용을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데 동의함.
- BEC는 무역분류에서 수입자료와 같은 투입구조, 자본재, 중간재, 소비재를 위한 SNA 카테고리과 같은 그룹화된 산출구조 간의 연계표이므로 1차적인 적용이 BEC의 투입과 산출의 범위와 세부사항을 결정할 것이며 어떻게 이러한 방법이 유럽국가들의 활용측면에서 주된 산업그룹화에 관련되는 지를 결정하게 될 것임.
- 소규모 전문가 그룹이 1차적 적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처음 임무를 떠맡게 될 것이며 2007년 말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일부 전문가 그룹이 멤버가 지원함 : 프랑스, 미국, 인도 등

3. ISCO 개정

○ 개정안 분류체계 개정 과정

- 전문가 그룹은 국제직업분류 구분류 업데이트를 위한 업무와 함께 노동부에 의해서 이루어짐. 노동부는 2007년 최종 업데이트된 분류체계를 ILO 3자간 노동통계 전문가 그룹 미팅을 통하여 승인받을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함. 이러한 절차는 제 17차 국제 노동통계 컨퍼런스에서 결정된 사항임
- 전문가 그룹은 ISCO-08 분류체계를 검토하고 제안된 개정안의 주요 변경내용에 대해 토의함. 국제기준으로서 적합한 활용에 대하여 몇몇의 현안에 대해 논의됨

- 전문가 그룹은 ILO의 노력에 치하하고 그러나 ISCO 기술소그룹은 남은 시간에 완료해야 할 많은 일들을 인식함

< 제기된 현안 문제 >

- 연구원에 대한 정보 필요성이 제기됨. 연구원이 상위분류에서 별도로 구별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광범위한 토의가 있었음. 이러한 문제는 분류체계 개발과정에서 전문 소그룹에서 이미 토의되었던 사항임. 결론적으로 연구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개정안에서 별도로 분류하는 것은 최선책이 아닌 것으로 내림(일부 EUROSTAT 등은 이번에 안 되면 다음에는 꼭 해야 한다고 주장)
- 전문가 그룹은 중국에서 제안한 전통전문직의 제안에 대한 토의를 함. 국제분류에서 전통직을 취급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중요한 문제임. 그러나 하나의 지역에 특징적인 카테고리의 신설은 적절하지 않다고 우려를 표명함. ILO에서는 기술 전문가 그룹과 WHO의 자문을 받아 이러한 사항과 기타 보건 직업에 대한 범위 등을 고려할 것임
- 다른 분류체계문제와 관련, 전문가 그룹은 분류의 명칭과 일부 카테고리의 내용을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다는 데 동의함. 특히 ICT와 관련된 직업은 더욱 그러함. 교사와 관련, 특히 직업교사의 의미 등에 관한 사항은 직업분류 기술소그룹에서 더 검토가 필요성이 있다고 제기됨.

○ ISCO의 시행

- 개정분류 시행 지원을 위한 ILO 계획과 관련, ILO에서 제안된 전반적인 접근방법에 찬성.

- 제안된 지역별 워크숍은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또한 직업분류를 업데이트하기 위한 국가별 분류발전을 도모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지역별 협력 체제를 구축하는 계기도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이러한 지역에서 아주 작은 국가에 대한 지원을 함에 있어 아주 적은 재정적인 지원보다는 기술적인 지원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유용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함. 이러한 기술 지원 국가들은 지역협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며 ISCO-88을 지역적으로 채택했던 당시의 예로 알 수 있음.

4. 보건 분류의 국제 분류 군

- 전문가 그룹은 ICD의 다가오는 분류개정에 이용될 특정 틀과 WHO의 국제 분류군의 현재 개발상황에 대해 보고받음. 또한 전문가 그룹은 보건 분류는 UN 경제사회분류의 한 부분을 구성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UN 분류군으로 포함을 위해 WHO 분류군에서 파생분류를 검토할 것임.
- 전문가 그룹은 향후 분류개정뿐만 아니라 ISIC/CPC 시행과정에 ICD 개정을 위해 사용된 공개 웹포럼기반 틀이 검토되고 평가되어야 함.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전문가 그룹은 WHO에 의한 이러한 틀의 사용과 ICD개정과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함

5. 목적별 지출 분류

- 전문가 그룹은 동 분류의 개정 필요성을 검토- 특히 소비자물가지수 산출에 밀접하게 적용되고 있는 COICOP(목적별 개인소비지출분류)

- 전문가 그룹은 이 점에서 제 시간에 이 분류를 변경을 해야 할만한 정당한 근거를 찾지 못했지만 가계조사나 유럽국가들을 위한 소비자물가지수를 위해 사용된 것과 같은 COICOP 확장은 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되도록 만들어져야 함.

6. 국제경제사회분류군

- 전문가 그룹은 분류군을 정의하는 관련 문서들을 검토하고 관련 분류들의 범위와 정의들을 확인함. 그러나 현재 기준분류, 파생분류, 관련분류 군내의 카테고리별 배분이 적절한지를 검토할 필요성 제기- 특히 서비스 무역.
- 전문가 그룹은 분류군내의 분류에 대한 업데이트된 정보가 UN 분류 웹사이트 같은 중앙 포털로부터 접근 가능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함. 그러나 개별 분류구조는
- 전문가 그룹은 기타 관심분류에 대한 정보는 분류군에서 세부적인 사항들을 명확하게 포함하지 않더라도 이용은 가능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함. 이것은 특별한 주제 즉, 국제적으로 관심있는 분류를 포함함. 그러나 분류군과 똑같이 엄격한 승인절차를 요하지 않음. 이러한 분류의 리스트는 여러 차례 검토되어서 전문가 그룹회의에 회부될 것임

II. 국제표준직업분류 기술소그룹회의 결과

□ 일반사항

- 직업분류 개정안을 가능한 빨리 마무리하여 개정 초안을 6~7월 중으로 완료하는 것이 바람직

- UNSD 통계위원회에 상정하여 동의를 얻어 놓은 상태이지만 일부 분야에서 약간의 문제들이 제기됨
 - ICT 카테고리, Health 등에서 완전히 정리되지 않았으며 추가적으로 직업교사 등의 문제도 남아 있음
- 색인어를 어떻게 작성하는 문제도 남아 있음
- 개정안은 7월 중으로 3개 국어, 즉 프랑스어, 스페인어로 발간할 계획으로 되어 있음
- 추가적으로 질의서에 대한 회신 내용이 도움이 될 브라질, 싱가포르의 회신내용을 검토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함.
- 12월에 개최되는 3자간 회의(노동, 통계, 유엔)에는 전문가 소그룹에서 하지 못했던 분류 정의 등
 - 정부조직 중 각 국가에서 통계청, 노동부, 노동조직, 이용자 등 다양한 구성원으로 구성하고 24개 국가의 대표자를 포함하여 회의를 개최할 계획임

○ 워크숍

- 개정안 시행을 위하여 개정안에 대한 워크숍은 현재 편성을 고려중에 있으며 지역별 안배를 위하여 아시아, 아프리카, 아메리카 등 국가를 다양하게 편성할 것임
- 워크숍에는 직위가 높은 사람보다는 실무자 위주로 참가하는 것이 바람직
- 워크숍을 인터넷을 이용하여 실시하는 것이 어떤지에 대해 ILO에서는 매뉴얼과 절차가 복잡하여 시행하기 어렵다고 함
- 경제사회분류 전문가 그룹에서 있었던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 그룹에서 대책안 마련
- ISCO-88을 사용하고 있는 국가 중에서 분류 적용에 관한 세부 정

보를 제공하면 ILO에서 보완적으로 신분류 적용에 관한 자문을 해 줄 것임

- 선정된 국가는 센서스 조사를 위해 분류적용에 관한 지원을 해 줄 수 있음
- 신 분류 적용 및 권고와 관련 국가별 센서스 계획도 꼼꼼히 살펴보고 일정표를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 : 센서스 시행이 빠른 경우는 분류 적용이 시기적으로 늦어버릴 수 있음

○ 분류 구조 등 검토 관련

- “문화관련 매니저”를 유네스코에서 신설할 것을 주장함에 따라 이에 대한 검토
 - 캐나다 등에서는 별도의 세분류로 분류하고 있으나 스웨덴 등에서는 규모가 작아 별도로 분류하고 있지 않음.
 - ILO에서는 유네스코에서 말하는 문화관련 매니저는 박물관 등과 유사하여 별도의 분류 불요
 - 결론적으로 “별도의 구별여부”, “고용규모”, “적절한 분류될 수 있는 카테고리” 등을 고려해 보았을 때 별도의 분류는 불필요하다고 결론지음
- 235 기타 교사 전문가 적절성 관련
 - 러시아 등에서는 많은 교사들이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또는 음성으로 직업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음.
 - ⇒ 국제표준직업분류는 formal sector에만 엄격하게 한정된 것이 아니고 informal sector도 포함하며 자동차 교습 교사 등과 같은 사람은 교사(teacher)보다 강사(instructor)가 적절
- 264 창조 및 공연예술가, 작가 적절성 관련
 - ⇒ 명칭을 auther, 저절리스트 및 기타 어학 전문가로 변경

- 4141 도서관 및 문서 정리원의 분류 적절성
 - ⇒ 일부 국가에서 문서정리원은 거의 없다고 하나 실제로 존재하며 적절함
- 7339 목재, 섬유, 가죽 및 관련 재료의 수공 기능원 신설 여부
 - ⇒ 이러한 재료 이외의 수공 기능원이 있으므로 신설
- 732 포터, 유리제조원 및 관련 종사자와 733 목재, 섬유, 가죽 및 관련재료에 의한 수공 기능원을 통합
- 7314 의료, 치기공사 및 관련 기능원을 32로 이동
- 농장 매니저를 대분류 1에 할 것인지 잠정안에서처럼 대분류 6에서 분류할 것인지와 관련,
 - ⇒ 미국과 러시아 등에서는 대규모 농장이 많으므로 대분류 1에서 분류하고 있으나 다른 국가에서는 대부분 대분류 6에서 분류하는 것이 적절 : 결론짓지 못함.
- 6114에서 약용작물 재배원 신설 관련,
 - ⇒ 국제분류에서는 파악이 어렵고 분류기준이 바뀌게 되므로 어려움
- 수의사 보조 신설
- 223 준의료 전문가 적절성
 - ⇒ 기본적으로 여기에 분류되는 것은 진단, 처방 등을 의사 도움 없이 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하였으나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 일단 결정 보류
- 개정분류 “2232 긴급 준의료 전문가”를 대분류 3 준전문가로 할 것인지 대분류 5 서비스 및 판매원으로 할 것인지
 - ⇒ 앰블런스 사무원을 캐나다 등에서는 대분류 3에서 의료 준전문가 내로 분류하고 우리나라에서는 현행분류에서는 앰블런스 대원은 대분류 3에서 구급대원은 대분류 5에서 분류하고 있고 국가별로

차이가 있어 결론짓지 못함 : WHO 등에 자문 필요

- 한의사 및 관련 준전문가 분류 신설 관련,
 - ⇒ 2,3차 회의 시 우리나라에서 한의사에 대한 분류 신설 제안을 했으나 중국과 약간의 의견차이가 있었으나 이번에는 중국에서 제안. 제안내용은 대분류 2와 3에서 각각 “Chinese...”를 사용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우리나라도 이의를 제기하였고 ILO 측도 적절치 않다고 함 : 다만 전통 의료 전문가와 전통의료 준전문가를 신설하는 것을 WHO 등과 협의
- Building 보호원을 빌딩 마무리 및 관련 업무 종사원에 분류하는 것과 관련,
 - ⇒ 캐나다, 스웨덴 등에서는 현행 분류가 적절하고 러시아, ILO 등에서는 대분류 5 서비스직 내에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함
- 5122를 대분류 9 단순노무직으로 이동 고려
- 232 직업교육교사와 2355 정보기술 훈련원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음
 - ⇒ 232 직업교육교사의 개념을 명확히 함으로써 정보기술 훈련원과 중복되지 않게 포괄범위를 정함
- 2532 통신엔지니어링 전문가를 2143 전자엔지니어와 ICT 전문가 중 어디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한지와 관련,
 - ⇒ 직무성격상 통신엔지니어는 전자적인 분야와 관련이 깊지만 ICT와 밀접히 관련이 있으므로 2532로 분류하는 것을 고려하되 관련기관의 자문을 받을 필요 있음
- 응용프로그래머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개발자 처럼 프로그램을 개발하지 않으므로 경제사회분류 전문가회의에서 제기된 것처럼 프로그래머와의 구별을 명확히 하기 위해 명칭을 “컴퓨터 응용프로그래머”로 수정
- Commercial sex를 5159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와 폰섹스, 인터넷

섹스를 같이 볼 것인지

- ⇒ Commercial sex는 공식적으로는 제외하고 국가분류에서 공식적으로 분류를 한다고 하더라도 폰섹스나 인터넷 섹스 등 물리적 접촉이 없는 경우는 동일하게 볼 수 없음
- 3138 자동조립라인 조정원 : 삭제
- 7532 섬유, 가죽 및 관련 제품 제조원에서 제조공정의 기계화로 대분류 8(815) 기계조립원 및 조작용으로 이동
- 엔지니어링을 하나의 그룹으로 분류하는 방안에 대해
⇒ 하나의 직업군으로 분류하기는 어려움
- 7129을 신설하여 건물 해체작업자를 포함
- 9217 물 및 연료(빨감) 수집원을 어디에 분류할 것인지
⇒ 962 기타 단순 노무직내에서 세분류 신설

□ 분류개선 및 추후 계획

○ 분류 개선 및 개정 ISCO-08 적용 관련

- 모든 국가의 분류 적용을 적극 도와 줄 필요 있고 ISCO-88이나 ISCO-08를 직접 적용하지 않더라도 회의 및 워크숍 등에 참여함으로써 정의 및 명칭 등을 일치시킬 수 있음

(정의)

- 정의 등은 설명문에 포함시키고 가이드라인, 원칙 등은 어디에서 설명할 것인지
- 달리 분류되지 않은...은 2가지 형태로 설명 : 1) 마이너 그룹에 포함되지 않는... 2) 등

(정보제공)

- 영어, 프랑스, 스페인어로 분류를 작성할 시 공식적으로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등 토의 : 공식적인 승인에 준함

(색인어)

- 오퍼레이터 등 특정 직업타이틀은 별도로 검토 필요
- 국가별로 색인어를 검토하여 보강(영어로 타이틀 변환시 주의)

(웹포럼)

- 웹 포럼은 최근 업데이트 중
- 이에 대한 문제점 토의 및 제시(최근 ID 사용)
- 변경사항은 웹사이트에 게재

(향후 계획) : ILO

- 웹 포럼 활성화 및 현안사안에 대한 토의
- 3자간(통계, 노동, 이용자) 회의 준비 : 12월
- 특수분류 추가 검토
 - 보건, 관광, 농업 등에 대해 OECD, WHO, ILO, WTO 등 자문

Ⅲ. 결론 및 건의사항

- 가능한 우리나라 분류의 국제표준직업분류 기준 적용
- 국제회의 참석자의 지속적인 전문가회의 참석과 철저한 준비로 국제적 입지 강화
- 국제기구 공동 작업에 적극 참여 및 국가적 차원의 지원